질의에 대한 회신

수 신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참 조 : 문화체육과 최상문님

제 목 :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직원 수당 예산 집행에 대한 검토의견

귀청에서 의뢰한 2019. 10. .자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의 요지

귀청은 2018. 12. 15.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직원 수당에 대하여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강남구체육회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2019. 8. 16. 수당지급 공문요청을 하면서 2019. 1. 1.부터 8. 31.까지 소급 지급요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직원 수당의 소급 지급이 가능한지,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면 소급지급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2. 검토의견

가. 관련 법령

(1) 지방재정법

>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에 지원할 수 있다.

5. 체육단체 사업 및 사무국 운영 경비

7. 그밖에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체육단체 등은 제5조제2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회와 협의하여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직원 수당의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1)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직원 수당은 귀청의 예산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되어 있고, 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지방보조금의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소급지급 여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취지,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 등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먼저 지방보조사업 공모를 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본문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Ⅳ. 3 지방보조금 교부'를 보면,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소급 지급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① 강남구체육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4호의 규정에 따른 **'공모절차 제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② 공모절차 제외대상의 경우는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와 다르게 교부금 지급절차를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③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1호에 따라, 체육회 사무국 직원 수당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체육회 사무국 직원수당이 2019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 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5조 제1항 5호 등에 의하여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를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체육회 사무국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점, ⑥ 지방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체육회 사무국 직원 수당을 소급 지급함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소급 지급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향후 사무국 직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등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수당의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면 소급 지급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1) 귀청은 먼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체육회 사무국 직원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시 사업계획서 등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한 후에 교부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한편, 사무국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직무수당조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국 직원이 실질적으로 근무한 2019. 1. 1.부터 소급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오며, 본 의견서상의 의견은 귀하가 보내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추후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의견서는 위에서 살펴본 사안과 쟁점에 한정하여 귀하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귀하 이외의 분이 사용할 수 없으며, 귀하가 제3자에게 본 의견서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하려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 법무법인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 10. .

법무법인 나눔
대표변호사 정 범 성
(T:02-3477-0021/medilaw1@hanmail.net)